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jjung@kiep.go.kr

서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jmsuh@kiep.go.kr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jymoon@kiep.go.kr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jhsong@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당면과제 중심으로 작성)

- 2012년 말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함.
- GCF는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재원(climate finance)에서 GCF의 역할이 기대됨.
- 현재 GCF 이사회는 기금의 사업모델을 개발 중이며, 기금 조성 및 재원보충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개도국들은 설립 이래 기금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GCF 고유의 사업모델이 수립되어야만 공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임.
- GCF 운영은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선진국의 GCF에 대한 의지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을 지는 신기후체제가 개시될 예정이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투명하고 실질적인 감축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GCF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GCF 관련 논의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하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협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정식으로 발효됨.

- 협약은 “당사국은 형평(equity)과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그리고 각각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의 의무를 규정함.
-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더불어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

[표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관련 조항

제 목	번호	주요 내용
의무	4.3	선진국의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자금의 규모
	4.4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에 대한 적응 비용 지원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여부에 달려있음. • 개도국에 있어 여전히 최우선 목표는 경제· 사회적 발전 및 빈곤감소임을 고려
재정 메커니즘	11.1	기술이전을 비롯한 자원 메커니즘은 증여 또는 차관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국총회의 지침 하에 기능해야 함.
	11.2	투명한 운영 시스템하에서 재정 메커니즘은 모든 당사국의 형평성 및 균형 있는 입장을 반영해야 함.
	11.5	자원 제공에 있어 선진국은 양자 또는 지역, 다자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
이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	12.1	모든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 - 인위적 배출량의 국가 재고량 -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별 이행 과정

자료: United Nations,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그 결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목표가 수립되고 GCF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감축 부담을 지는 신기후체제가 개시될 예정임.
- GCF는 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주체로서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인 당사국총회의 지침하에 기능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함.
 - GCF의 성격은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재원이자 그 재원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임.
 - 현재 지구환경금융(GEF)이 협약의 소규모 기금(LDCF¹), SCCF²)을 관리하고 협약의 재정 메커

1)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2)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니즘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전담기구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협약의 외부 조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라는 기후재원 장기 목표 달성에 있어 GCF의 역할과 당사국총회와의 관계 설정이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인바,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GCF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주도로 GCF와 당사국총회 간의 관계, GCF에 대한 당사국총회의 지침, GCF를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에 관한 MRV³⁾ 체계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개도국은 GCF가 기후재원의 주요 채널로 기능하고, 당사국총회의 GCF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제공해야 하는 기후재원의 여러 채널 중의 하나로서 GCF를 고려하는 한편 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함.

2) 기금의 조성

- GCF의 운영지침(Governing Instrument)은 대안적 출처를 포함한 공공재원 및 민간자본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표 2] GCF의 예상 재원출처

공여주체	조성방식
선진국 정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국별 예산
민간부문	민간투자, 민간금융
대안적 출처	항공 및 해운세, 금융거래세, 글로벌 탄소세, 국제탄소시장

자료: 저자 작성

- 기금 조성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나, 민간자본 동원은 공적자금 활용, 수익창출 및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때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은 선진국의 공공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개발원조(ODA) 경험으로부터 공여국이 다자기구에 공여하는 유인을 파악하고 이를 GCF의 기금 조성 방식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 또한 선진국의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GCF는 여타 기후변화 관련기구 또는 기금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할 것임.
 - GEF⁴⁾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편익 추구가 목적으로, 조직운영의 비효율이 드러났으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단점을 드러냄.
 - 세계은행 CIF⁵⁾는 GC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주요한 다자채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몰조항을 통해 CIF가 순조롭게 GCF로 수렴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함.

3) 기금의 전달

- GCF는 기본적으로 무상 증여와 양허성 차관 방식을 도입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단 또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임.
- GCF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며, 수원국은 이를 통해 기금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을 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추구할 수 있음.
- 또한 GCF 이사회는 제한적인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자원 동원력이 보다 탁월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차액지원, 저탄소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 중임.
- 기존 다자기금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기금의 전달(delivery)을 위해 GCF는 ① 수원국의 기금 접근 및 활용 역량을 지원하고, ②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공하며, ③ 공여국 및 수원국의 자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상호책임성을 추구해야 함.

4) Global Environment Facility

5) Climate Investment Fund

3. 정책 제언(또는 시사점)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①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 공여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재원에 대해, 다자기금 중 특히 GCF에 대한 공여를 증대시키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 기금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함.
- 아직 세부 운영요소들이 설계과정에 있는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차별화하여 공여유인을 제고할 수 있음.
 - 유사한 성격을 지닌 GEF와 CIF는 세계은행이라는 강력한 권한의 수탁처를 돕으로 인해, 기금에 대한 수원국의 영향력 축소라는 약점을 가짐.
 -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과 같은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금을 설계해야 함.
- 국가 주도적이라는 GCF의 핵심원칙이 공여유인 극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원국 주도의 효과적 자원활용과 확대된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야함.
 -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에 집중된 지원과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평가,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함.

②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 기금 사용방식의 결정은 선진국의 공여유인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임.
- 국가 주도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수원국은 국가대행기구(NDA)⁶⁾와 국가이행기구(NIE)⁷⁾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데, 특히 국제기금의 현지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ND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NDA는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방식을 실행할 국가이행기구(NIE)를 제안하거나, 국가 기후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안서를 GCF의 지원 대상으로서 이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GCF 초기의 준비 및 대비 활동범주에 NDA 역량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6)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7) national implementing entity

- GCF는 기금 관리기능까지 일부 포괄하는 강화된 직접적 접근방식 도입을 고려 중이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기금 운영과 동시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NIE의 승인방식이 조속히 결정되어야함.
 - 공여국은 국제 수준의 수탁기준과 환경 및 세이프가드 제도를 NIE 승인요건으로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이를 직접적 접근을 허용한 데 대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하는 상황임.
 - 공여국 입장에서는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개도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승인기준을 충족하도록 GCF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성과기반 접근방식 역시 개도국의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입장에서 공통으로 실행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와 프레임워크 개발이 요구됨.
 - GCF의 성과는 현지에서 성과 프레임워크에 의해 파악된 결과로 판단가능하며, 현지 담당자의 역량과 축적된 경험에 따라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정량적·정성적 결과물 도출이 결정됨.

③ 협상의 진전

-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진전은 GCF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는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재원을 조성하고 이 중 적응을 위한 기금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제공되도록 합의하였으나, 기후재원의 조성 및 활용방안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음.
 - 선진국이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얼마나 많은 재원이 GCF를 통해 유입될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더반 당사국총회(COP17)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체제 수립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 실무그룹(ADP)⁸⁾이 구성되어 새로운 체제 이행을 위한 수단(MOI)⁹⁾으로서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임.
 - MOI에서 GCF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도록 논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기후체제 이행의 관점에서 GCF의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어야할 것임.

8)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9) means of implementation

- 당사국총회의 위임으로 GCF와 당사국총회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GCF에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당사국총회를 지원하는 상설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5차 상설위원회에서 GCF와 당사국총회 간의 협정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당사국총회 및 GCF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음.
 - GCF에 대한 초기지침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책과 우선순위, 적합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상설위원회는 재원의 조성 및 활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도록 GCF에 지침을 제공하여 GCF가 협약의 메커니즘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할 것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① GCF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 할당방식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 자율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할당방식이 본격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공여 시기와, 방식, 할당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신기후체제 논의와 궤를 같이하게 될 부분으로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5년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원에 관한 공여자의 역할권한이 확대될 경우 자금 조성이 더 용이할 수 있으나, GCF의 출범배경부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역사적 책임에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사회의 구성 또한 공여자 위주가 아님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제한적임.
 - 뚜렷한 사업모델의 수립 이전까지 재원 조성방식의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은 본질적 이슈인 자율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시 자율방식을 용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할 때 정기 할당방식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 및 위상과 관련하여 그 정도와 시기에 대한 원칙 및 계획 수립이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임.
- 우리나라는 재원 총당방식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수시 자율방식을 정기 할당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전환 시기에 대한 기준으로는 예컨대 적용과 같이, 시장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재원 유입이 어려운 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음.

- 일부 부문에 대한 정기 할당방식의 우선적용 논의가 나머지 부문에 대한 수시 자율방식의 적용으로 자동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 자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CIF의 주 대상이었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PSF¹⁰⁾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 자율방식에서 정기 할당방식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합의하고, 전환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가능함.
 - 이러한 혼합방식은 궁극적 해결책이라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타협가능한 부문에 대해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GCF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도모할 수 있음.

②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 기금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GCF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준비 및 대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이사회 합의가 이뤄진 상황임.
 - 준비 및 대비 지원을 역량강화의 한 범주로 본다면, GCF는 한동안 유엔기구와 같은 기술협력 전문기관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저탄소·기후 복원력있는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GCF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협력 전문기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자본을 활용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 재원을 조달 가능한 금융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등 몇몇 선진국이 GCF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공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단계적 접근방식에 따라 GCF는 일부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금을 역량강화사업에 집중 배분할 예정임.
 - ‘GCF-readiness’, 즉 국가대행기구(NDA) 역량강화, 국가이행기구 승인기준 충족 지원,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현지 담당자 역량배양 등에 지원될 것임.
 - 국제기구들은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GCF의 역량강화 지원이 다른 기금 및 기구의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GCF 유치공약으로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GCF 이사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주시하여 개도국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여 GCF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10) private sector facility

- 과거 개도국과 협력 경험을 토대로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분야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저탄소 개발전략의 범주인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전수, 산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지원 등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 관련 양자 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GCF 사무국 유치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인 양자와 다자원조의 연계를 고려하여 GCF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양자사업과 GCF에 대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함.

③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GCF 유치의 파급효과는 기금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거나 GCF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나타날 것임.

- 전자의 경우 사무국과 사무국 직원의 활동, 관련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를 지원하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GCF 사업을 수행하는 기후변화 및 녹색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컨설팅 업체가 해당됨.

● 금융 산업은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현재는 세계은행이 GCF의 임시 수탁기능을 3년간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음.

- GCF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의 역할은 기금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기금 금융 자산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 또한 가능함.

- GCF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금융자산이 늘어날 것이며,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3년 후 수탁기관에 관한 재검토 시, 수탁기관의 재설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 기금의 설계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GCF가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계은행이 수탁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세계은행을 3년간 임시 수탁자로 설정했지만, 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 현재는 GCF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위와 같은 개도국의 주장요인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사무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들어 수탁기관의 재배치를 주장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GCF에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법적 행위를 허용하였는데, 이 조항은 사무국이 기금의 수탁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사무국 유치를 통해 GCF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
 - GCF 사업과 관련된 많은 조달 수요가 창출될 것이나, 정보 접근성 확대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의 과제임.
 - 정부는 사무국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시책에 GCF와 정보공유체계 구축, 인력 양성, 전문가 관리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GCF 성공을 위한 협상대응

- 더반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후체제 형성과 이를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자원, 기술개발과 이전, 그리고 역량배양 부분이 논의됨에 따라, 이행수단을 지원하는 핵심요소로서 GCF의 조기정착이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함.
- 장기재원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장기재원의 조성경로와 재원조성 및 활용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 기후재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향후 2020년까지 선진국이 조성하기로 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경로를 규명하는 토대가 됨.
 - GCF로 재원이 조속히 유입되도록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와 제공 시점을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공여하기로 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개도국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후재원의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정책 논의에 있어 감축과 적응 분야의 불균형한 재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칸쿤 합의에 명시되었듯 적응 부문을 위한 지원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지원되도록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야함.
 - 특히 적응분야에 있어 민간재원 단독으로 투자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감안하여 GCF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원이 민간재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 또한 조성된 재원이거나 활용을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시스템의 일관성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함.
 - 제공재원과 실제지원의 규모 차이는 각국의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을 어렵게 함.
 - 2014년 1월까지 선진국이 감축 및 자원, 기술, 역량배양 지원 등을 보고하는 첫 번째 격년 보고서에 일관된 보고 양식이 강조되고 있고, GEF와 GCF가 서로 비교 가능한 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기후재원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해야함.

- 신기후체제의 이행수단으로 언급되는 기술이전이나 역량배양 부문을 GCF가 지원하도록 각국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의지를 널리 알리고 다른 국가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